

세한대학교평의원회 소집 및 개최동의서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 5조 내지 제 7 조에 의거하여 제2차 세한대학교평의원회 소집 및 개최를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다 음 -

1. 개최일시 : 2018년 0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2. 회의장소 :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본관 3층 회의실
3. 평의원회 안건 :
 - 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
 - 나.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2018년 02월 09일

세한대학교평의원회 의원 남궁승태(남궁승태)
의원장 필식()
의원 박상진()
의원 박희석()
의원 이봉숙()
의원 전노선(전노선)
의원 박장현(박장현)
의원 강창규(강창규)
의원 이주현(이주현)
의원 김웅(김웅)
의원 성정준(성정준)

2018년도 제 2차

(2018. 02. 13)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세 한 대 학 교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2018년도 제 2차

회의소집 통보일	2018. 02. 09
의원정수 11명	참석의원 6명

1. 일 시 : 2018. 02. 13. 11:00

2. 장 소 : 당진캠퍼스 본관 3층 회의실

3. 참 석

구 분	직 명	성 명	비 고
참 석	의 장	남궁승태	
불 참	부 의장	박상진	
불 참	의 원	장필식	
불 참	의 원	박희석	
불 참	의 원	이봉숙	
참 석	의 원	전노선	
참 석	의 원	박장현	
참 석	의 원	강창규	
참 석	의 원	이주현	
참 석	의 원	김 웅	
불 참	의 원	성정준	

4. 회의 안건

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나.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5. 회의내용

남궁승태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2차 세한대학교 평의원

(간서명 : 박장현, 강창규, 이주현)

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번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강창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과장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의원이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

〈교비회계〉

(단위 : 천원)

과목명	지 출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액(A-B)
보수	12,630,133	13,189,425	△559,292
관리·운영비	7,572,713	6,310,297	1,262,416
연구·학생경비	13,531,473	12,453,227	1,078,246
교육외비용	358,911	296,438	62,473
전출금			
예비비	1,360,000	1,532,800	△172,8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2,401	3,000	9,401
고정자산매입지출	5,733,680	7,127,845	△1,394,165
유동부채상환	875,000		875,000
고정부채상환	3,000		3,000
학교기업사업비		183,890	△183,89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1,412	622,528	△561,116
자금지출총계	42,138,723	41,719,450	419,273

남궁승태 의장 : 강창규의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박상진 의원 :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원안에 동의합니다.

남궁승태 의장 :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의원 : 없습니다.

(간서명 :

박상진 강창규 이경수)

남궁승태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자문
건입니다. 본안은 이주현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원이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1. 개정 사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시행2018.01.01.)에 의거하여,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
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규정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제 3 조 (구성 및 자격)에 “4. 조교 1명”을 신설하고, “4.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을 “5.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개정하고,

제 4 조(위촉)에 “④ 전조 제1항 제4호의 평의원은 조교회의를 통해 추천한 조교로 한
다.”를 신설하고,

제 5 조 (임원) ③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21조의 4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13조의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5조 (개방이사 추천) ①항에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21조의 3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추천위원회) ①항에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21조의 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를

“①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13조의 1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 (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임교원 5명 2.정규직원 4명	제 3 조 (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임교원 5명 2.정규직원 4명

(간서명 : 박장수 · 강철우 · 이주현)

3.재학생 1명 4.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	3.재학생 1명 4.조교 1명 5.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
제 4조 (위촉)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 4조 (위촉)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전조 제1항 제4호의 평의원은 조교회의를 통해 추천한 조교로 한다.(신설2018.03.01.) ⑤ -----생 략-----
제 5 조 (임원)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21조의 4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제 5 조 (임원)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13조의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제15조 (개방이사 추천) ①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21조의 3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개방이사 추천) ①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추천위원회) ①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21조의 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19조 (추천위원회) ①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13조의 1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남궁승태 의장 : 아주현의원으로부터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전노선 의원 :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 : 박장희 . 김 청우 . 이주현)

남궁승태 의장 :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의원 : 없습니다.

남궁승태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록 대표 간서명자 3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박장현의원, 강창규의원, 이주현의원으로 선임할 것에 참석의원 전원일치 찬동하여 발의내용과 같이 대표간서명자를 선정하다)

남궁승태 의장 : 장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록이 정서 되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의결사항

-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간서명 : 박장현 강창규 이주현)

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번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강창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과장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의원이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

<교비회계>

(단위 : 천원)

과목명	지 출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액(A-B)
보수	12,630,133	13,189,425	△559,292
관리·운영비	7,572,713	6,310,297	1,262,416
연구·학생경비	13,531,473	12,453,227	1,078,246
교육외비용	358,911	296,438	62,473
전출금			
예비비	1,360,000	1,532,800	△172,8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2,401	3,000	9,401
고정자산매입지출	5,733,680	7,127,845	△1,394,165
유동부채상환	875,000		875,000
고정부채상환	3,000		3,000
학교기업사업비		183,890	△183,89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1,412	622,528	△561,116
자금지출총계	42,138,723	41,719,450	419,273

남궁승태 의장 : 강창규의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박상진 의원 :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원안에 동의합니다.

남궁승태 의장 :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의원 : 없습니다.

(간서명 : *남궁승태*)

(간서명 : *강창규*)

(간서명 : *이석현*)

남궁승태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자문건입니다. 본안은 아주현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현의원이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1. 개정 사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시행2018.01.01.)에 의거하여,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규정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제 3 조 (구성 및 자격)에 “4. 조교 1명”을 신설하고, “4.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을 “5.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개정하고, 제6조(임기) ①항에 “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 및 조교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 (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임교원 5명 2.정규직원 4명 3.재학생 1명 4.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	제 3 조 (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임교원 5명 2.정규직원 4명 3.재학생 1명 4.조교 1명 5.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
제 6 조 (임기) ① 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 6 조 (임기) ① 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 및 조교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남궁승태 의장 : 아주현의원으로부터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서명 : 박경수 강창호 이기윤)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전노선 의원 :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남궁승태 의장 :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의원 : 없습니다.

남궁승태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록 대표 간서명자 3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박장현의원, 강창규의원, 이주현의원으로 선임할 것에 참석의원 전원일치 찬동하여 발의내용과 같이 대표간서명자를 선정하다)

남궁승태 의장 : 장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록이 정서되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의결사항

-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간서명 : 박장현

김 청 기

이주현)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남궁승태

부의장 박상진

(인)

의원장 필식

(인)

의원 박희석

(인)

의원 이봉숙

(인)

의원 전노선

의원 박장현

의원 강창규

의원 이주현

의원 김웅

①

의원 성정준

(인)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8. 02. 13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남궁승태

(간서명 : 김충수, 박장현, 이주현)